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과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박이장 설치권고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사무에 있어서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대 환
노동부장관

◎法律 第7465號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

勤勞基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본문중 “15歲 미만인 者”를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제1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되 형사처벌제도는 합

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화된 노동환경과 국제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의 노동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으로 상향조정하며,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작성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마련(법 제36조의2 신설)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나. 최저근로연령 조정(법 제62조제1항 본문)

중전의 규정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최저연령을 18세로 조정함.

다.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반영(법 제96조제7호의2 신설)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법 제112조 단서 신설)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대 환
노동부장관

◎法律 第7466號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

賃金債權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제4항, 제8조 및 제9조”를 “제4항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제12조제1항중 “지급한 때에는”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로, “그 지급받은 替當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그 지급받은 채當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事業主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事業主와 당해 勤勞者는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를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채當금 수급자와 연대하